

국외채권관리규정

제 정 : 1998.10. 1
제 1차 개정 : 2002. 5. 7
제 2차 개정 : 2008. 8.26
제 3차 개정 : 2010. 3.26
제 4차 개정 : 2010. 7. 6
제 5차 개정 : 2012. 4.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방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보험사고 및 수출신용보증사고와 관련된 국외채권의 회수관리(이하 “국외채권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외채권관리에 관하여 무역보험법령 및 약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외채권”이라 함은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선적후) 포함)사고건에 대하여 보험금(대위변제금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수출자, 보증계약자를 포함하여 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가 채무자(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수출대금채권(손해배상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공사의 권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준국외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등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수출대금채권을 회수하였으나 이를 회수금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
2. 공사가 대한민국 영토내에 소재하는 채무자 등의 보증인 또는 그 소유재산에 대위할 수 있는 권리

③ 이 규정에서 “회수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보험자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이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된 날
2. 보험계약자 등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이 보험계약자 등의 계좌에 입금된 날

④ 이 규정에서 “회수비용”이라 함은 약관에서 규정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수비용이 회수한 금액(연체이

자 포함)을 초과할 때에는 그 회수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다.

1.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반액
2. 회수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의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수출물품의 전매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기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제4조(국외채권관리) 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외채권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국외채권관리를 개시한다.

1. 동일수출입자간 2건 이상의 보험사고가 계류중이거나 그 지급이 전부 완료되지 아니한 때
 2. 보상규정 제 17조에 의거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연계보험보험금 지급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외채권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채권관리를 개시한다.
- ③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연계보험 면책처분에도 불구하고 구상채권 총당 등의 목적으로 국외채권회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채권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자료의 제공) 채무불이행 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국제신용투자보험자 연맹, 신용조사기관, 채권추심기관, 기타 채무자 등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 장 국외채권의 관리

제6조(채권등급의 분류 및 변경) 제4조에 의거 국외채권관리가 개시된 사고건은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등급을 3개 내지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7조(채권회수방법) 국외채권에 대한 회수방법은 공사의 보험자 대위권(이하 “대위권”이라 한다) 행사에 의한 회수방법과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회수방법으로 구분한다.

제8조(보험자대위권) ①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위의 의사표시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

협금지급에 따른 공사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대위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채권 관련서류를 이전받는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무역보험법 제8조의 3에 규정된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채권등급이 제6조에 의거 최상위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위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다.

제9조(대위권행사의 방법) ① 대위권의 행사는 서면 또는 방문에 의한 최고, 독촉 등 임의변제촉구를 먼저 실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② 일정한 기간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행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변호사 명의로 발송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기관 등을 통한 추심 및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권리행사) ①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제9조의 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권리행사를 하게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채무의 유예 또는 감액을 공사에 요청한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권리행사의 이행확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매 6월마다 권리행사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과 권리행사의 이행상황을 통지하게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전에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리행사의 종료신청) 보험계약자 등이 권리행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과 함께 권리행사종료를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국외채권관리의 종결
2. 대위권 행사를 통한 국외채권관리
3. 회수의무의 계속이행 촉구

제13조(수출물품의 전매) 수출물품의 전매와 관련된 사항은 보상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채권행사의 유예) ① 채무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채권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 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채무자 등의 재산이 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공사의 국외사무소(주재원을 포함하여 이하 같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채권추심기관 등이 채권행사유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행사를 유예하기로 한 때에는 유예기간 경과후 권리의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채권의 감액) 채무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감액할 수 있다.

1. 채권을 감액하여 줌으로써 채권회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사의 국외사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채권추심기관 등으로 부터 회수를 위하여 채권감액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3. 기타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국외채권의 매각) ① 국외채권은 매각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매각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상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파산절차 등의 참가) 채무자 등이 파산, 청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신고, 채무자의 권리승계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준국외채권의 관리) 준국외채권은 구상권에 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9조(회수비용의 보전) ① 보험계약자 등이 국외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보상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수비용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 3 장 지급보험금의 반환 등

제20조(보험금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

1. 사고조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보험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다만 그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험계약자 등이 약관상 규정된 통지의무, 손실방지 및 경감의무를 해태하여 손실이 발생 또는 확대된 경우
4. 기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보험금의 반환통지) 보험금의 반환은 반환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하며,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금 납부기일(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받는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연체금) 보험계약자 등이 제21조에 의한 반환금액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원금과 함께 받는다.

제23조(채권의 보전) 보험계약자 등이 납부토록 통지받은 금액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국외채권관리의 종결

제24조(국외채권관리의 종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채권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채권 등을 전액 회수한 경우
(파산배당이 완료되었거나 채권감액후 잔액을 회수한 경우 포함)
2. 회수와 관련한 권리의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경우
3. 채무자 등의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법적조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공사의 국외사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채권추심기관 등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 없다고 통보된 경우
5. 채무자 등이 파산으로 인하여 채무면제 판결을 득하였거나, 배당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기타 채무자 등의 영업중단,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5조(보험계약자 등의 종결요청) ① 제1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권리행사의 종료를 신청하여 국외채권관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실익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1. 공사의 해외사무소
2. 채무자 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4. 채권추심기관
5. 채무자 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변호사, 공증인
6.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

제26조(회수보상금 지급) ① 본사 또는 국외지사가 회수주체가 되어 진행한 건 중에서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게 회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채권회수에 기여한 경우에도 회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수보상금 지급대상, 지급율 등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외채권관리 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보상담당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서식의 제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관계서식의 제정 및 개폐는 국외채권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이전에 수출보험사무처리규정, 보상규정 및 사후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국외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사후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약관 및 국외채권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된 국외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8.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국외채권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국외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3)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